



Dictionary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특허심판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설치. 특허심판원은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법조약

27개조항 21개규칙 및 6개 합의선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6. 2.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현재는 미발효 중이다. 국내 및 지역 출원절차 및 방식요건의 통일화, 출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출원방식요건의 완화, 특허방식요건에 대한 상이한 국제표준 도입을 배제하고자 가능한 PCT(특허협력조약)규정과 등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세서를 대신하는 도면(drawion)의 제출만으로 출원일 인정이 가능하고 출원서 양식 및 요건을 개정될 PCT 국제단계 요구조건을 준용하며, 재외자에 대한 강제대리 예외사항의 채택여부를 규정하고 2005. 6. 2 이후 희망하는 회원국은 100% 전자출원제도 시행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단순한 출원인의 실수에 대한 절차의 추완 및 권리의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여부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 중에 있다.

특허법상설위원회

특허법의 세계적 통일화(harmonization)를 위해 WIPO가 '98.6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자협약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게 되면 그 자에게는 가장 먼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특허법 제33조). 이 권리는 양도성이 있는 일종의 재산권이며 특허출원여부에 관계없이 발명자는 이 권리를 발명권으로서 활용(사용, 처분)할 수 있다.

특허기술정보센터

국내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특허청과 해외정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수집, 가공하여 구축한 산업재산권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고속전용 회선, 전화회선, PC 통신 등을 통하여 산업계, 연구소, 특허사무소, 학계, 발명계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전문서비스업체. 2000.1.3부터 국내기술정보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350만 여건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권포기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단독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기재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청구항마다 포기도 가능하다.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말소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